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 5. 2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4월 16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4월 25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3. 4. 2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오승환)

가. 제안이유

- 안전행정부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」의 연차적인 사회복지 인력확충 계획에 따라 총 정원을 순증하고, 일부 직급별 정원비율을 증감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 증원(안 제2조)
 - 정원의 총수 “1,283명” 을 “1,288명” 으로 증원
 - 집행기관의 정원 “1,256명” 을 “1,261명” 으로 증원
-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표 개정(별표 2)

- 일반직공무원의 비율란 중

□6급 비율 “21%이내” 를 “23%이내” 로 개정 (증 2%)

□9급 비율 “9%이상” 을 “7%이상” 으로 개정 (감 2%)

- 기능직공무원의 비율란 중

□6급 비율 “5%이내” 를 “6%이내” 로 개정 (증 1%)

□7급 비율 “20%이내” 를 “38%이내” 로 개정 (증 18%)

□8급 비율 “56%이내” 를 “45%이내” 로 개정 (감 11%)

□9급 비율 “19%이상” 을 “11%이상” 으로 개정 (감 8%)

- 별정직공무원의 비율란 중

□6급상당 비율 “38%이내” 를 “34%이내” 로 개정 (감 4%)

□7급상당 비율 “38%이내” 를 “45%이내” 로 개정 (증 7%)

□8급~9급상당 비율 “24%이상” 를 “21%이상” 으로 개정 (감 3%)

○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(별표 3)

- 총계 “1,283” 을 “1,288” 으로 개정 (증 5명)

- 일반직 총계 “1,058” 을 “1,065” 로 개정 (증 7명)

□5급 소계 “60” 를 “61” 로 개정 (증 1명)

□6급이하 소계 “990” 를 “996” 으로 개정 (증 6명)

- 별정직 총계 “11” 를 “12” 로 개정 (증 1명)

- 기능직 총계 “213” 를 “210” 로 개정 (감 3명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(안전행정부)의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」의 연차적인 사회복지 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정원책정 기준범위에서 복지인력의 증원 등 총 정원을 순증하고,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직 및 별정직 6급 직급별 정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, 인사 적체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를 진

작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서 영등포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“1,283명” 에서 “1,288명” 으로 하고, 안 제2조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“1,256명” 에서 “1,261명” 으로 5명을 증원하고,
-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,
 - 일반직 6급 비율을 “21%이내” 에서 “23%이내” 로 하여 2% 확대하되, 9급 비율을 “9%이상” 에서 “7%이상” 으로 하여 2% 축소함.
 - 기능직 6급 비율은 “5%이내” 에서 “6%이내” 로 하여 1%를, 기능직 7급 비율은 “20%이내” 에서 “38%이내” 로 하여 18%를 각각 확대하되, 기능직 8급 비율은 “56%이내” 에서 “45%이내” 로 하여 11%를, 기능직 9급 비율은 “19%이상” 에서 “11%이상” 로 하여 8%를 각각 축소함.
 - 별정직 6급상당 비율을 “38%이내” 에서 “34%이내” 로 하여 4%를, 8급~ 9급상당 비율을 “24%이상” 에서 “21%이상” 로 하여 3%를 각각 축소하되, 7급상당 비율을 “38%이내” 에서 “45%이내” 로 하여 7% 확대함.
-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에서, 정년으로 결원이 발생된 기능직 정원을 213명에서 210명으로 3명을 감원하고, 일반직중 6급 이하는 990명에서 996명으로 6명을, 별정직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각각 증원함.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정원책정 기준」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“복지인력 조직 개선지침” 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며, 기능이 감소된 업무 등 관련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안전행정부의 “2013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” 에 따르면, 우리구의 2013년도 총액인건비는 985억 1764만 3천원, 인력은 1,303명으로 통보되었으며, 2013년도 우리구 총액인건비 예산액은 930억 7,738만 1천원이 편성되어 있어 「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

원 확충 시행지침 에 의한 신규 총원인력 인건비 4억 2천만원(14명, 1인당 30,000천 원)을 감안하더라도 안전행정부의 기준 총액 인건비 보다 50억 2,026만 2천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. 【붙임 총액인건비 기준 및 2013년도 세출총괄표 참조】

-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복지인력 수요 변수(복지수급자 수 등)와 정책목표 변수(복지예산비율 등)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총원하고, 타 자치구에 비하여 인사 적체인 6급 이하 직급별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, 승진적체 해소를 통한 직원 사기 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통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9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안전행정부 「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」의 연차적인 사회복지 인력확충계획에 따라 총 정원을 순증하고, 일부 직급별 정원비율을 증감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증원(안 제2조)

- 1) 정원의 총수 “1,283명”을 “1,288명”으로 증원
- 2) 집행기관의 정원 “1,256명”을 “1,261명”으로 증원

나.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표 개정(별표 2)

1) 일반직공무원의 비율란 중

- 6급 비율 “21%이내”를 “23%이내”로 개정 (증 2%)
- 9급 비율 “9%이상”을 “7%이상”으로 개정 (감 2%)

2) 기능직공무원의 비율란 중

- 6급 비율 “5%이내”를 “6%이내”로 개정 (증 1%)
- 7급 비율 “20%이내”를 “38%이내”로 개정 (증 18%)
- 8급 비율 “56%이내”를 “45%이내”로 개정 (감 11%)
- 9급 비율 “19%이상”을 “11%이상”으로 개정 (감 8%)

3) 별정직공무원의 비율란 중

- 6급상당 비율 “38%이내”를 “34%이내”로 개정 (감 4%)
- 7급상당 비율 “38%이내”를 “45%이내”로 개정 (증 7%)
- 8급~9급상당 비율 “24%이내”를 “21%이내”로 개정 (감 3%)

다.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(별표 3)

- 1) 총계 “1,283”을 “1,288”으로 개정 (증 5명)
- 2) 일반직 총계 “1,058”을 “1,065”로 개정 (증 7명)
 - 5급 소계 “60”를 “61”로 개정 (증 1명)
 - 6급이하 소계 “990”를 “996”으로 개정 (증 6명)
- 3) 별정직 총계 “11”를 “12”로 개정 (증 1명)
- 4) 기능직 총계 “213”를 “210”로 개정 (감 3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 및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.

다. 합 의 : 필요없음.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생략

※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및제2호
(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며, 단순히 행정내부의
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)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사무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: 심사대상 사무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심사대상 사무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283명”을 “1,28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256명”을 “1,261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-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3%이내	32%이내	30%이내	7%이상

- 비고 1. 일반직의 경우에는는 연구직,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
 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- 기능직

구 분	6급	7급	8급	9급
기준비율	6%이내	38%이내	45%이내	11%이상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- 별정직
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기준비율	0%	34%이내	45%이내	21%이상	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288	1,288			
정무직	1	1			
일반직계	1,065	1,065			
3급	1	1	-	-	-
4급	7	5	1	1	-
5급	61	30	2	11	18
6급이하	996	996			
별정직계	12	12			
기능직계	210	210			

□ 조례 제3조 [별표 2]변경안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</p> <p>-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4급이상</td> <td>5급</td> <td>6급</td> <td>7급</td> <td>8급</td> <td>9급</td> </tr> <tr> <td>기준비율</td> <td>1%이내</td> <td>7%이내</td> <td>21%이내</td> <td>32%이내</td> <td>30%이내</td> <td>9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,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- 기능직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6급</td> <td>7급</td> <td>8급</td> <td>9급</td> </tr> <tr> <td>기준비율</td> <td>5%이내</td> <td>20%이내</td> <td>56%이내</td> <td>19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- 별정직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5급상당</td> <td>6급상당</td> <td>7급상당</td> <td>8급상당</td> <td>9급상당</td> </tr> <tr> <td>기준비율</td> <td>0%</td> <td>38%이내</td> <td>38%이내</td> <td colspan="2">24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	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1%이내	32%이내	30%이내	9%이상	구 분	6급	7급	8급	9급	기준비율	5%이내	20%이내	56%이내	19%이상	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	기준비율	0%	38%이내	38%이내	24%이상		<p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</p> <p>-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4급이상</td> <td>5급</td> <td>6급</td> <td>7급</td> <td>8급</td> <td>9급</td> </tr> <tr> <td>기준비율</td> <td>1%이내</td> <td>7%이내</td> <td>23%이내</td> <td>32%이내</td> <td>30%이내</td> <td>7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,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- 기능직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6급</td> <td>7급</td> <td>8급</td> <td>9급</td> </tr> <tr> <td>기준비율</td> <td>6%이내</td> <td>38%이내</td> <td>45%이내</td> <td>11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- 별정직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5급상당</td> <td>6급상당</td> <td>7급상당</td> <td>8급상당</td> <td>9급상당</td> </tr> <tr> <td>기준비율</td> <td>0%</td> <td>34%이내</td> <td>45%이내</td> <td colspan="2">21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	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3%이내	32%이내	30%이내	7%이상	구 분	6급	7급	8급	9급	기준비율	6%이내	38%이내	45%이내	11%이상	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	기준비율	0%	34%이내	45%이내	21%이상	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1%이내	32%이내	30%이내	9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5%이내	20%이내	56%이내	19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0%	38%이내	38%이내	24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3%이내	32%이내	30%이내	7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6%이내	38%이내	45%이내	11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0%	34%이내	45%이내	21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조례 제4조〔별표 3〕 변경안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					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계	<u>1,283</u>	<u>1,283</u>				총계	<u>1,288</u>	<u>1,288</u>			
정무직	1	1				정무직	1	1			
일반직계	<u>1,058</u>	<u>1,058</u>				일반직계	<u>1,065</u>	<u>1,065</u>			
3급	1	1	-	-	-	3급	1	1	-	-	-
4급	7	5	1	1	-	4급	7	5	1	1	-
5급	<u>60</u>	<u>29</u>	2	11	18	5급	<u>61</u>	<u>30</u>	2	11	18
6급이하	<u>990</u>	<u>990</u>				6급이하	<u>996</u>	<u>996</u>			
별정직계	<u>11</u>	<u>11</u>				별정직계	<u>12</u>	<u>12</u>			
기능직계	<u>213</u>	<u>213</u>				기능직계	<u>210</u>	<u>210</u>			